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KS인증 신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tr> <td style="padding: 2px;">번호</td> <td style="padding: 2px;">제 호</td> <td style="width: 20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연 월 일</td> <td style="padding: 2px;">2020. . .</td> <td style="width: 20px;"></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산 업 표 준 화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div>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tr> <td style="padding: 2px;">제출 연월일</td> <td style="padding: 2px;">2020. . .</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법제처 심사 전 </div>	번호	제 호		연 월 일	2020. . .		제출 연월일	2020. . .	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품명"을 "품명"으로 한다. "1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1제...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과 같이 신설한다. 등의 사유로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 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영상통화를 활용하 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할 사가 가능해지면 법 제20조에 따른 현장조 제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인증심사 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이 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품질 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구조문대비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 정 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현)</td> <td>[별표6] 공장표시관(제12조제3항 관련) 1.·2. (현행과 같음) 3. 품명 4. ~ 6. (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별표7] 1. 공장심사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td> <td style="vertical-align: top;">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td> </tr> </tbody> </table>		개 정 안	(현)	[별표6] 공장표시관(제12조제3항 관련) 1.·2. (현행과 같음) 3. 품명 4. ~ 6. (현행과 같음)	[별표7] 1. 공장심사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번호	제 호															
연 월 일	2020. . .															
제출 연월일	2020. . .															
	개 정 안															
(현)	[별표6] 공장표시관(제12조제3항 관련) 1.·2. (현행과 같음) 3. 품명 4. ~ 6. (현행과 같음)															
[별표7] 1. 공장심사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개정 주요내용

- ①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의 근거 규정 신설
- ②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하여 KS 인증심사를 재신청한 경우, 기존에 생략 가능하였던 공장심사 항목을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결여되는 항목으로 변경 및 개정 필요
- ③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의 명칭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행화
- ④ KS 인증받은 공장에 부착할 수 있는 표시판의 표기 내용 중 '가공기술' 부분을 삭제

①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의 근거 규정 신설**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심사 대상 공장에서 공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서류심사 또는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현장에서 공장심사가 가능해 질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KS인증의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함.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인증심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채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영상통화 등으로 선택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9월 29일 보도자료 「디지털 뉴딜 이끔 “비대면 경제 표준화“, 민관이 함께 된다」에서 금년 10월말부터 시행 계획을 보도하였음.

<비대면 KS-KC 인증심사 등 제도개선, 다이렉트 온라인 보험·보증 출시>

- 아울러, 즉시 시행 가능한 비대면 시험인증, 무역금융, 채용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 (시험·인증) 한국산업표준인증(KS)·국가통합인증(KC) 등 인증심사 시 심사원의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영상통화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면접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 KS의 비대면 시험·인증은 금년 10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②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하여 KS 인증심사를 재신청한 경우, 기존에 생략 가능하였던 공장심사 항목을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결여되는 항목으로 변경 및 개정 필요**

- 현재 공장심사는 적합하나 제품심사가 부적합한 경우 또는 인증품목 내 다른 제품 등의 추가 인증이 필요하여 인증심사를 재신청한 경우, 공장심사 6개 항목(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제품관리, 시험·검사설비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중 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등 3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공장심사 항목 중 제품심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품질경영관리’와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등 2개 분야에서 심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③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의 명칭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행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개정되어,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중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중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으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 ④ 「가공기술」 관련 규정은 '08년 산업표준화법 개정·시행 시 삭제되어 KS인증 표시판에 표기되는 ‘가공기술’ 부분 삭제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50호(2020. 09. 21.)